

#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2005. 7. 12(화)

김 재 진(한국조세연구원)  
박 능 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개 요

- 일시 : 2005. 7. 12(화) 10:00~12:30
-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
- 순서

### 10:00 ~ 10:15 개회사 및 격려사

- ▶ 개회사 :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 격려사 : 이해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 10:15~12:15 주제발표 및 토론

####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 사회자 : 김태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자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능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토론자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남기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신영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주석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이철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본부장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홍백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나다 순)

### 12:15~12: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2:30 폐 회

## 〈목 차〉

I. 서 론	1
II.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2
1.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사회안전망 현황	2
2. 근로빈곤층의 증가현황과 원인	5
III. 외국의 운영사례	10
1.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10
2. 영국의 Working Tax Credit과 Child Tax Credit	13
3. 프랑스 근로소득보전세제(Prime pour l'Emploi : PPE)	17
4. 벨기에 근로소득보전세제: In-Work Tax Credit	20
5. 호주 Family Tax Benefit 및 Working Credit 제도	23
6. 뉴질랜드의 Family Assistance 제도	27
IV. 소득과약 현황 및 문제점	30
1. 근로소득	30
2. 사업소득	33
3. 자영 농어민	37
4. 이자·배당·임대·연금소득	38
V. EITC 도입시 집행가능성	40
1. EITC 집행가능성과 소득과약	40
2. 도입시 집행가능성	41
3. 집행가능성을 위한 개선과제	44
VI. EITC 도입과 관련한 주요 검토과제	48
1. 도입효과	48
2.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9
3. 도입시기	50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의 적용방법	51
5.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52
VII. 도입시 검토가능 모형	53
1.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 설정방향	53
2. 검토 모형	54
VIII. 결 론	61
참고문헌	63

## I. 서 론

- 최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
  -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하기보다는 근로의욕을 유지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소득보전을 행함으로써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이 요구됨
  - 모든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원대상을 근로빈곤층으로 한정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회복되었으나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오히려 빈곤율은 상승하였음
  - 일자리의 양극화현상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으며,
  - 고용이 불안하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
  
-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특성상의 한계를 가짐
  - 보충급여방식으로 인하여 근로유인효과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정부의 지원에 안주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자산조사에 따르는 수치심이 싫어 신청을 기피하는 사각지대의 발생
  - 자산조사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시행이 필요

## II.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 1.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사회안전망 현황

□ 근로빈곤가구의 규모 (2003년 전인구 기준)

- 근로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중 약 15.4%임
- ※ 근로빈곤가구: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60%미만인 가구 (저소득가구)중에서 일을 통한 소득(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가구는 전가구의 21.9%인데, 약 6.5%는 노인가구 등 근로능력자가 없거나 취업자가 없는 가구임
  -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빈곤가구는 7.4%

<표 II-1> 저소득가구의 분포

구 분	저소득 가구	근로빈곤가구	근로빈곤가구(아동)
경상소득	21.9%	15.4%	7.4%
경상소득(공적이전 제외)	23.0%	16.0%	7.6%
가처분소득	21.9%	15.4%	7.2%

※ 보사연 내부자료(2004)

※ 근로빈곤가구(아동)는 근로빈곤가구 중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근로빈곤가구의 취업 실태

- 저소득가구 중 취업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의 비율은 64%로 취업자가 있음에도 대다수가 빈곤상태에 있음을 보여줌
- ※ 1년 중 가구 내 취업자가 있었던 가구는 약 70%임(=근로빈곤가구 15.4%÷저소득가구 21.9%)
  - 다만, 취업자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근로빈곤가구에서 36%, 일반가구에서 43%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는 취업자가 2명이상인 가구가 32%로 일반가구에 비해 크게 낮아 아동양육부담이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표 II-2> 근로빈곤가구 내 취업자수 분포

(단위: %)

구 분	전 체	저소득 가구			일반 가구
		전 체	근로빈곤가구	근로빈곤가구(아동)	
합 계	100.0	21.9 (100%)	15.4 (100%)	7.4 (100%)	78.1 (100%)
없음	14.5	7.9 ( 36%)	1.6 ( 10%)	0.5 ( 7%)	6.6 ( 8%)
1명	46.2	8.5 ( 39%)	8.3 ( 54%)	4.5 ( 61%)	37.7 ( 48%)
2명이상	39.3	5.5 ( 25%)	5.5 ( 36%)	2.4 ( 32%)	33.8 ( 43%)

※ 근로가구 및 근로가구(아동)에 취업자 수가 없는 가구는 연간으로 볼 때 근로(사업)소득은 발생하였으나 조사 당월의 상태가 실직상태인 가구

※ 보사연 내부자료(2004)

□ 근로빈곤가구 소득분포

- 취업자가 있거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재산소득·이전소득의 비중은 낮음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저소득가구 40% 미만 계층은 근로(사업)소득이 58%에 불과하나
  - EITC의 주요 대상계층이 될 근로빈곤가구(40~60%)의 근로(사업)소득은 80% 이상을 차지

<표 II-3> 저소득가구 소득계층별 평균소득 분포 및 구성

(단위: 천원)

구 분	저소득 가구			근로빈곤가구			근로빈곤가구(아동)		
	40%미만	40~50%	50~60%	40%미만	40~50%	50~60%	40%미만	40~50%	50~60%
근로·사업소득(A)	254	502	820	409	717	1,000	552	985	1,295
재산소득(B)	16	23	27	10	12	18	7	12	12
사적 이전소득(C)	86	131	112	56	81	75	50	66	59
공적 이전소득(D)	78	90	69	60	70	49	64	72	39
경상소득(E)	434	746	1,028	535	880	1,142	673	1,135	1,405
비율(A/E)	58%	67%	79%	76%	81%	87%	82%	86%	92%
비율(B/E)	4%	3%	3%	2%	1%	2%	1%	1%	1%
비율(C/E)	20%	18%	11%	10%	9%	7%	7%	6%	4%
비율(D/E)	18%	12%	7%	11%	8%	4%	10%	6%	3%

※ 보사연 내부자료(2004)

※ 40%, 50%, 60%는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며, 중위소득의 40%는 최저생계비 수준과 유사하며, 50%(최저생계비의 약 125%)는 법정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와 유사하고, 60%(최저생계비의 약 154%)는 저소득가구의 기준으로 사용

□ 근로빈곤층의 소비/소득 실태

- 저소득가구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구경상소득)은 1.0을 초과하여 부채의 증가 혹은 자산의 감소를 겪고 있음
- 특히 중위소득 40% 미만의 근로빈곤계층의 평균소비성향은 1.5를 초과하여 심각한 소득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에 의한 현금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40~50% 계층의 경우에도 평균소비성향이 1.0을 초과하여 소득이 소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표 II-4> 근로빈곤계층의 소득수준별·연도별 평균소비성향

빈곤범주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중위소득40%미만	1.88	1.86	1.79	1.83	1.58	1.73	1.69
40~50%	1.04	1.28	1.12	1.16	1.14	1.14	1.12
50~60%	0.93	1.05	1.06	1.06	1.04	1.05	1.05

※ 도시가계연보 매년도 원자료 분석

※ 여기서 사용된 가구경상소득은 공공부조성 급여를 제외한 금액임.

□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상황

- 저소득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자영자와 실업자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
  - 저소득가구는 임금근로자가 48%, 비임금근로 종사자가 41%이나 일반가구는 각각 68% 및 29%로서 큰 차이를 보임
  - 실업자도 저소득가구는 11.2%인 데 반해 일반가구는 3.4%임

2. 근로빈곤층의 증가현황과 원인

□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지속적으로 증가

- 도시근로자가구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급속 증가
  - 최저생계비 기준: ('98) 8.2% → ('02) 5.2% → ('04) 6.0%
  - 중위소득 50% 기준: ('98) 10.7% → ('02) 9.7% → ('04) 11.7%
  - 중위소득 60% 기준: ('98) 17.0% → ('02) 16.6% → ('04) 18.0%



<표 II-5> 근로빈곤율, 실업률 및 GDP 성장률 추이('9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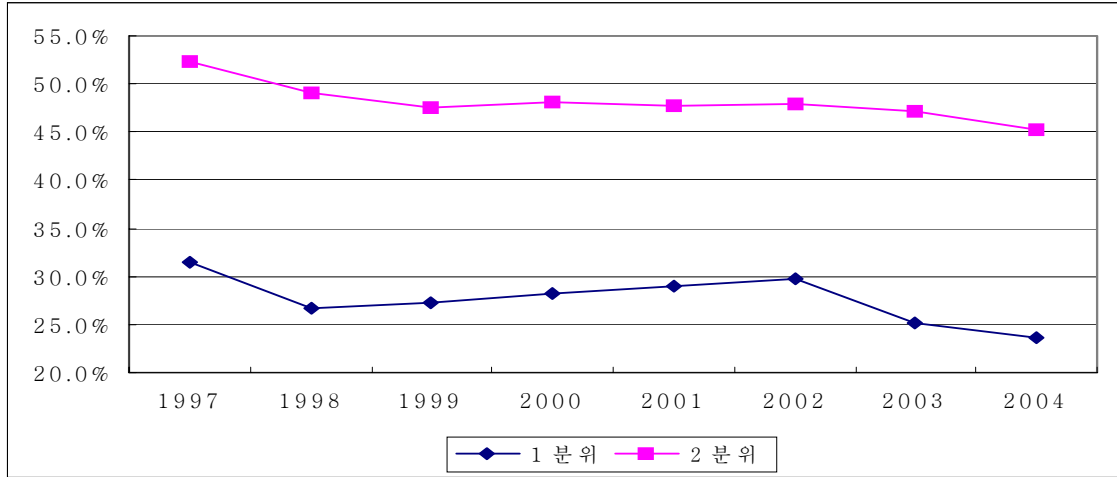
		'97	'98	'99	'00	'01	'02	'03	'04
빈 곤 율 (%)	최저생계비기준	3.9	8.2	9.4	7.6	6.5	5.2	6.1	6.0
	중위소득 50% 기준	9.1	10.7	10.6	10.0	9.8	9.7	10.8	11.7
	중위소득 60% 기준	15.7	17.0	16.9	16.4	16.5	16.6	16.8	18.0
실질GDP성장률(%)		4.7	-6.9	9.5	8.5	3.8	7.0	3.1	4.6
실업률(%)		2.6	7.0	6.3	4.1	3.8	3.1	3.4	3.5

※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각년도 원자료 분석(가처분소득, OECD 가구균등화지수 적용)

※ 통계청 도시근로자가구 각년도 원자료 분석(중위소득 6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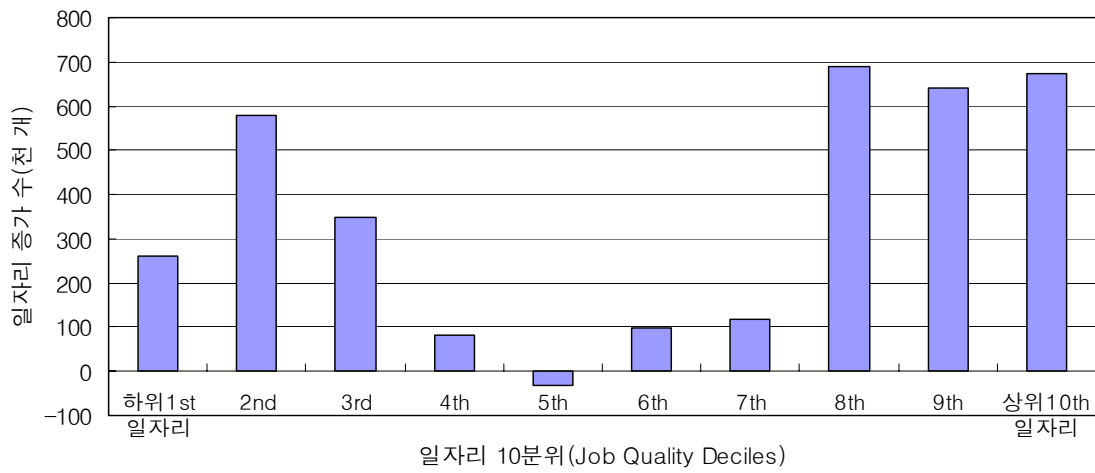
-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증가는 근로소득의 감소가 중요한 원인
  - 저소득가구의 일을 통한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에 비해 계속 감소해옴
    - 빈곤가구의 일을 통한 소득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낮으며 최근에는 하락추세가 가속화되어 평균과의 격차가 확산되고 있음
    - ※ 1분위는 '97년 평균 대비 31.6%의 근로(사업)소득을 벌었으나 '04년에는 23.7%로 하락(2분위는 52.3%에서 42.3%로 하락)
  -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보수를 기준으로 중간층 일자리(보수기준 4-7분위 일자리)는 감소하고 상위 및 하위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
    - 하위 일자리의 증가가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영향

[그림 II-1] 저소득가구 근로(사업)소득의 평균 대비 비율



※ 도시가계연보 각년도(도시근로자 기준)

[그림 II-2] 일자리 10분위별 증감현황('93~'02)



-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도 불안정한 비정규직근로자가 증가
  - '04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539만명으로 '01년 이후 약 180만명 증가하고 그 비중도 10%p 높아진 약 37%임
  -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은 상용직 임금의 50% 수준

<표 II-6>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추이('01~'04)

(단위: 만명, %)

	'01	'02	'03	'04
전체근로자(A)	1,366	1,418	1,440	1,489
비정규직 근로자(B)(B/A)	360(27.3)	379(27.8)	461(32.6)	539(37.0)

※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KDI, 2005)

<표 II-7> 정규·비정규근로자 월평균임금 대비

	'00 (상용직대비)	'01	'02	'03 (상용직대비)
상용직(천원)	1,554(100.0)	1,672	1,788	2,014(100.0)
임시·일용직(천원)	888( 57.1)	919	978	1,064( 52.8)
비정규직(천원)	813( 52.3)	877	955	1,001( 49.7)

자료: 연도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비정규직은 한시·시간제·파견근로·용역근로 등 비전형 근로자를 합한 광의의 개념

- 자영자 증가와 최근에 나타난 자영자 실질소득 격감도 근로빈곤층 증가에 큰 영향
  - 자영자는 '95~'04년간 전업종에 걸쳐 64만명 증가(557만→621만)
    - 매년 50만개가 창업하고, 40만개가 폐업하는 다산 다사형 구조로 자영자의 76%가 5년 이내 휴폐업
  - 자영자의 실질소득은 '00년까지 임금근로자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급감하여 '04년 실질소득은 '99년의 82% 수준

<표 II-8> 근로자와 자영자 월평균소득 비교

	'96	'00	'03	'04
임금근로자(A, 만원)	237	253	259	267
자영자(B, 만원)	301	304	244	248
근로자대비 자영자 비율(B/A)	127%	120%	94%	92%

※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KDI, 2005)

-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계층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와 5분위 분배율도 빈곤율과 같이 외환위기 이후 낮아지다가 최근 다시 증가
  -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가구의 가구원 부양능력을 떨어뜨려 빈곤추락의 위험 증가(생계형 자살 및 범죄 등)

<표 II-9>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 및 절대빈곤율

연도	지니계수	5분위분배율	빈곤율(최저생계비 대비)		
			100%기준	120%기준	150%기준
1998	0.3002	4.9171	7.0%	11.0%	19.7%
1999	0.3068	5.0283	8.4%	13.1%	23.2%
2000	0.2982	4.8065	6.8%	11.2%	19.6%
2001	0.3041	4.9101	5.6%	9.4%	17.3%
2002	0.3014	4.8195	4.5%	7.7%	15.0%
2003	0.3031	5.0374	5.9%	8.6%	14.3%
2004	0.3120	5.4266	6.5%	9.3%	15.0%

※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원자료 분석(경상소득 중 공공부조 소득제외 기준, OECD 기준 가구균등화)

### III. 외국의 운영사례

#### 1.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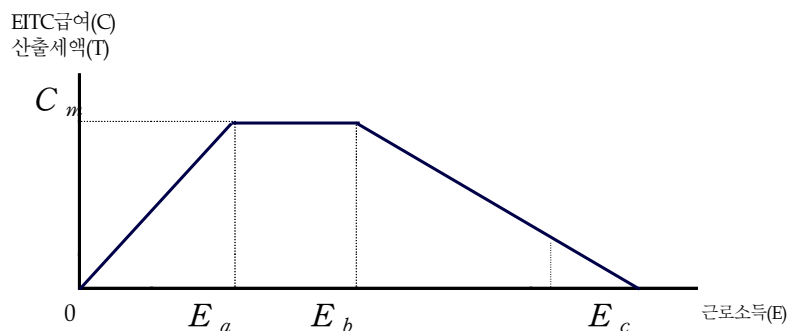
□ EITC의 도입목적과 제도의 발전

- EITC는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환급가능한 연방 소득세액공제 (Refundable Tax Credit) 제도임.
- EITC는 근로빈곤층의 사회보장세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975년 입법화하여 도입

<표 III-1> EITC 제도의 변화

구 분	1975년	2004년	비 고
최대 지급액	400달러	4,300달러	10.8배
적격 소득금액	8,000달러	35,458달러	4.4배
신청인원	6.2백가구	21백가구	3.4배
신청금액	12억5천만 달러	380억 달러	30.4배

[그림 III-1] 소득수준별 급여모형



□ EITC의 신청대상

- 자녀가 있는 납세자가 주 대상자이며, 현재는 자녀가 없는 납세자도 신청 가능하나 그 비중은 전체 EITC 수급자 중 2%에 불과
- EITC 신청자의 가구 유형은 가구의 가장(Head of Household)이 53%로 가장 많고, 맞벌이가구(Married-Joint)가 24%, 단독가구는(Single) 23%임('02년 기준)

□ 신청방식

- EITC Table을 납세자에게 제공하여 EITC의 산출을 용이하도록 함.
  - 납세자가 적정 EITC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납세순응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EITC Table을 개별 납세자에게 제공
- 소득세신고(tax return)를 기초로 EITC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함.
- 소득세신고서(Form 1040, Schedule C, Schedule E, Schedule F, Form 1040A, Form 1040EZ)와 EITC급여액을 계산한 worksheets을 제출
-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도 EITC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함.
- 1명 이상의 적격자녀가 있는 경우 Schedule EIC(Earned Income Credit, Qualifying Child Information)를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도의 순응도 조사결과 ('99년 3,500사례 조사결과)

- 오류 지급된 EITC 금액은 85억 달러~99억 달러(27%~32%)
  - 3가지 주요 오류 유형은 ①부양자녀 관련 오류(무자격 아동 신고 또는 2중신고, ②결혼·동거관련 오류(맞벌이의 경우에도 한부모 또는 홀벌이로 분리 신고), ③소득을 낮게 신고
  - 조세인프라의 확충으로 소득신고관련 오류는 낮은 반면(13%), 주민관리(결혼 및 아동)관련 오류비중이 대부분을 차지(73%)하여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상황

<표 III-2> EITC 유형별 과다청구액(1999년)

오 류 유 형	과다청구액(백만달러)
합 계	11,118(100%)
A. 무적격 아동 등재	3,284( 30%)
B. 부부합산 신고 기피	2,724( 25%)
C. 무적격 아동 등재 및 부부 합산신고 기피	1,984( 18%)
D. 과소신고소득	1,494( 13%)
E. 확인세무조사기피 등 미확인 오류	2,226( 20%)

자료: 미국 재무성 내부자료(The Challenges of Tax Reform in a Global Economy, p.19)

□ EITC의 효과

- 공공부조는 수급률이 낮은 반면(Food Stamp 수급률 43%), EITC는 수급율이 높아(75~86%) 급여수준이 낮음에도 탈빈곤 효과가 매우 큼 (EITC를 통해 2,100만명 중 22%인 460만명이 빈곤에서 탈출)
  - 미국 재무성 내부자료(The Challenges of Tax Reform in a Global Economy)
  - EITC 수급자격이 있는 소득구간의 근로빈곤층 중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해서 받는 경우는 24%에 불과하여 EITC 비중이 큼
- 복지제도에 비해 오류율은 높은 반면(Food Stamp 약6%), 행정비용은 낮은 것으로 조사
  - 행정비용이 낮은 이유는 조세제도와 결합되어 일반적 소득신고절차에 따라 대부분이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이며 저소득층(연소득 3만달러 미만)의 경우에도 EITC 급여나 기타 조세감면을 위해서 별도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17%에 불과
- 근로유인효과에 대해서는 가족유형에 따라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
  - '84~'96년간 편모 고용률이 58.5%에서 64.5%로 증가하였고 이중 약

- 60% 이상이 EITC제도 확대에 기인(Meyer & Rosenbaum)
- 편부모가구의 노동시장 참여율 3.3% 증가, 양부모 중 주소득자 0.7% 증가, 주소득자는 감소(Dickert, Houser, Scholz)
- 주로 2차소득원인 부인의 근로시간이 감소(Eissa & Hoynes, 98년)

## 2. 영국의 Working Tax Credit과 Child Tax Credit

### □ Tax Credit의 도입 배경과 목적

- 노동수요가 저숙련 근로자에서 고숙련 근로자로 이동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 임금격차가 벌어지면서 근로빈곤층 문제가 제기되고,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보다는 복지에 의존하는 부작용 발생
- 낮은 편부모 취업률과 그로 인한 높은 아동빈곤율
  - 영국의 편부모 취업률은 OECD 17개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
  - ※ 편부모 취업률: 영국 37%, 미국 68%, 이탈리아 68%, 프랑스 52%, 독일 50%
  - 유럽에서 가장 높은 아동빈곤율(약 30%) 기록
- 아동빈곤 퇴치 (Tackle child poverty)/ 가족지원 (Support Families)/ 근로의욕 고취 (Make work pay)를 목적으로 도입

### □ 제도의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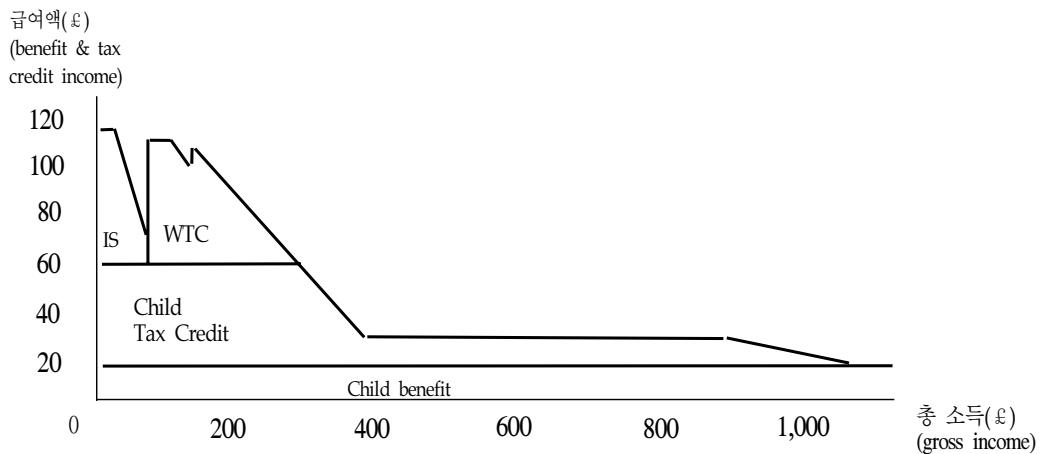
- 1971년 저소득 근로빈곤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로서 FIS(Family Income Support)를 도입한 이래 Family Support ('88년)으로 발전
- '99년 블레어 정부에서 WFTC(Working Family Tax Credit)가 도입되면서 조세제도(환급형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 '03년 아동관련 지원제도를 통합한 CTC(근로여부 무관, 아동수당 유지)와 저소득근로가구 지원과 근로유인을 위한 WTC로 분리



<표 III-3> 영국 Tax Credit제도의 변천과정

제도 변화	적용대상	평균 급여수준	소요예산	근로요건
FIS(1971년) 복지제도	저소득아동양육가구 7만(도입초기), 20만(1985)	주당 22 £ (1983)	-	24시간
FC(1988년) 복지제도	저소득 아동양육가구 32만(1990), 76만(1997) 78만(1999)	주당 38 £ (1992) 주당 57 £ (1998)	약 20억 £ (1999)	16시간
WFTC (1999년) 조세제도	저소득 아동양육가구 139만 가구(2002) 143만 가구(2003)	주당 63 £ (1999) 주당 86 £ (2003)	약 50억 £ (2002)	16시간
WTC & CTC (2003년) 조세제도	457만가구(2003-2004) - CTC만 수령: 297만 가구 - WTC & CTC: 144만 가구 - WTC만 수령: 16만 가구	연평균 2,639 £ (2003-2004)	약 120억 £ (2003-2004) - CTC: 82억 £ - WTC: 38억 £	16시간 (WTC)

[그림 III-2] 영국 WTC & CTC 급여체계: 아동 1인 가구



□ 제도의 개요

-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녀를 가진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
  - 연소득 13,910파운드까지는 아동세액공제 전액 수령

<표 III-4> 아동세액공제(CTC)의 구성요소와 금액(2005~2006)

구성 요소	연간 지급액	비 고
가족 요소(Family element)	545파운드	최소한 1자녀 이상
가족 요소, 유아(만1세미만) 추가요소 (Family element, baby addition)	545파운드	
아동 요소(Child element)	1,690파운드	아동 1인당
장애아동 요소(Disabled child element)	2,285파운드	장애아동 1인당 추가
중증 장애아동 요소 (Severely Disabled child element)	920파운드	중증아동 추가지급

-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저소득 가구를 보조하기 위한 제도로써, 자녀 및 장애 유무에 상관없음
  - 소득이 5,220파운드 미만인 경우 근로세액공제 전액 수령

<표 III-5> 근로세액공제(WTC)의 구성요소와 금액 (2005-2006)

구성 요소	연간 지급액	비고
기본 요소(Basic element)	1,620파운드	
편부모 요소(Lone Parent element)	1,595파운드	편부모 가정
부부인 경우(Second Adult element)	1,595파운드	양부모 가정
30시간 이상 근로(30 Hour element)	660파운드	
장애 요소(Disability element)	2,165파운드	근로 의무 조건
중증 장애 요소(Severe Disability element)	890파운드	
50세 이상자 (16-29시간 근무)(50+ element)	1,110파운드	취업후 1년한
50세 이상자 (30시간 이상 근무)(50+ element)	1,660파운드	취업후 1년한

#### □ 제도운영

- 신청자가 가족구성과 소득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검토한 후 지급 결정
  - WTC는 전년도 소득에 의거하여 우선 지급한 후 다음연도 종합소득신고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침.
  - 가족구성과 소득변동 등은 변동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음.
- 국세청은 지급조서를 통한 소득금액, 주소 등의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크로스체크하고 필요시 세무조사 등을 실시
  - 모든 세액공제는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의 대상임.
  - 국세청이 알고 있는 소득금액, 주소 등의 데이터와 소득 과소신고 혐의, 과다 경비계상 등 일정항목을 결합시켜 적정여부 판정
  - 과다지급의 경우 신청자는 초과분을 납부해야 하며, 벌금(Penalty)이 부과될 수 있음.

#### □ 제도의 성과

- 적용가구수: 457만가구(WTC 160만 가구)
  - 신청과정에서 수치심(stigma)을 자극하지 않아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영국정부는 90%까지 수급하는 것으로 평가)
- 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므로 면세점 이하자에 대한 빈곤감소 효과 기대
  - 근로시간 요건으로 인해 상용직(full-time) 취업가구보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실직가구와 단기(part-time) 취업가구는 WTC혜택이 없어 저소득계층내에서는 역진적인 소득분배 효과도 발생
  - 반대로 근로시간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고소득 파트타임 근로자가 지원받는 문제를 예방하고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장점이 있음.
- 편부모(lone parents)의 노동공급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5%p이상의 취업률 상승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
- 수급자에 대한 소득파악과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을 국세청에서 통합 관

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 WFTC(Working Family Tax Credit)의 경우 오류비율이 10~14% 수준으로 추정

### 3. 프랑스 근로소득보전세제(Prime pour l'Emploi : PPE)

#### □ 도입배경

- PPE는 2001년 5월 15일 죠스팽(L. Jospin) 좌파내각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의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도입되었으며, 현재 라파랭(Raffarin)이 이끄는 우파내각이 계승함.
  - 정책기조는 변화된 바 없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근로유인 제도의 필요성
  - 실업급여 및 공공부조제도인 RMI의 급여수준이 높아 근로유인의 어려움이 있으나, 실업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 속에 실업급여 축소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음.
- 2000년 시도되었던 사회보험 기여금 감면 법안이 헌법위원회의 위헌 판결로 법제화되지 못한 후, 이에 대한 대안적인 제도로서 영·미 제도를 참고하여 PPE를 도입

#### □ 도입목적

- 실업자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인이 주요 목적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
- PPE 제도는 독립된 법이 아니라 세법(CGI)의 한 조항으로 포함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는 <Article 200 sexies>로 명명되어 있음.
  - 200조 1항 : “고용으로의 복귀와 근로활동의 유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4조 B항에 명시된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PPE(Prime

pour l'Emploi)으로 명명된 조세환급의 권리를 제도화한다.”

□ 제도의 기본설계

- 가구 총소득 기준 대상가구 선정 → 근로소득 기준 개인별 급여산출  
→ 개인별 급여 합산 후 가구별 지급
- PPE는 일정 소득구간에서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고,  
이후 구간부터 급여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EITC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수급자격

- PPE는 일차적으로 가구 총 소득이 기준소득(Revenu Fiscal de Reference: RFR)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기준소득은 가구형태에 따라 매년 새로 정해짐
  - 단독가구의 연간 기준소득은 11,972 Euro, 부부가구의 연간 기준소득은 23,944 Euro
  - 부양가족에 대해 3,308 Euro가 추가되어 기준소득을 적용함
  - ※ 두 아이를 가진 부부가구라면,  $23,944 + (3,308 \times 2) = 30,560$  Euro가 기준소득임
- 저소득층 근로자의 취업상태나 종사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함
- 급여수준은 저소득층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을 기초로 산출되며, PPE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근로소득(Revenu d'Activite : RA)의 상한은 가구형태에 따라 다름.
  - 최소소득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소득이 연간 3,265Euro(최저임금의 30%)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급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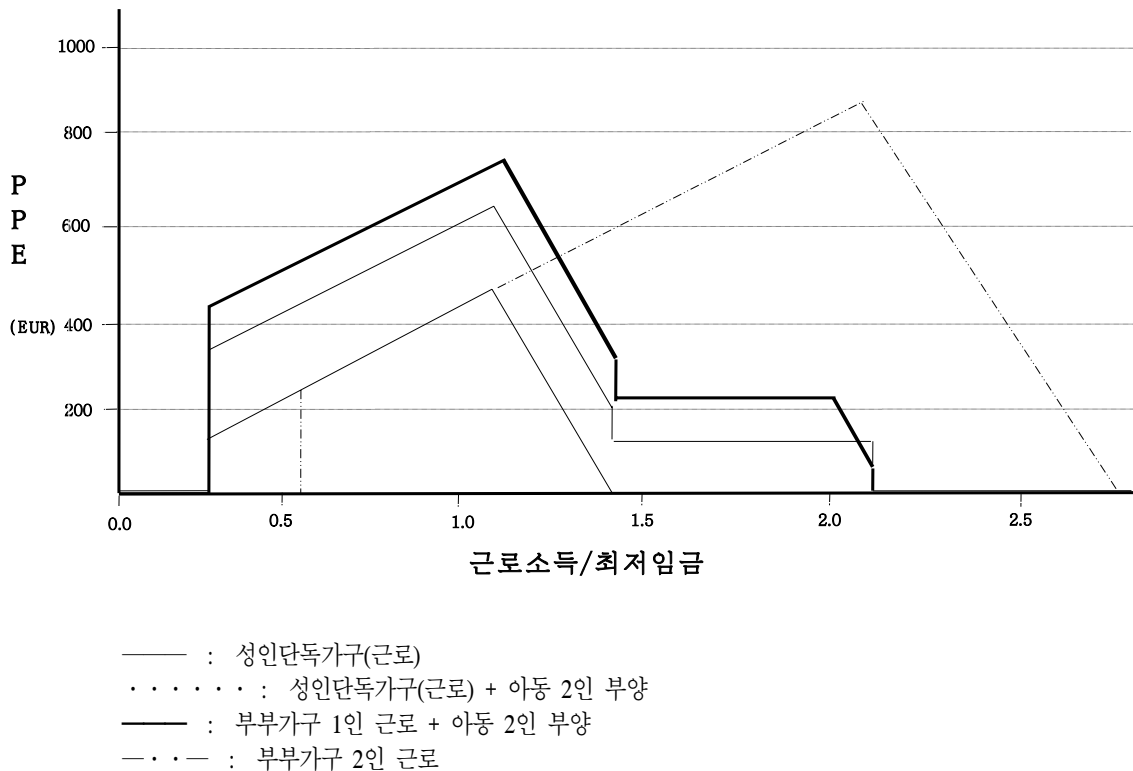
- PPE는 최저임금 대비 0.3~1.0 구간에서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액이

- 증가하고, 이후 최저임금 대비 1.0~1.4 구간에서 급여액이 감소함.
- 급여산정 시 공공부조 급여, 재산소득 등은 고려되지 않음

□ 최근 동향 및 쟁점사항

- 프랑스의 PPE는 전체 조세대상 3,400만 가구 중 약 900만 가구의 근로 빈곤층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가구당 평균 급여액은 약 280 Euro이며, 연간 PPE에 투입되는 재정소요는 22억 Euro임.
- 아직까지 제도도입 초기인 관계로 근로유인 효과나 소득증대 효과와 관련해서 확인된 결과가 거의 없으며, 최근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그림 III-3] 프랑스 PPE 제도의 기본구조



#### 4. 벨기에 근로소득보전세제: In-Work Tax Credit

##### □ 제도 도입배경

- 사회경제적 여건
  - 저숙련 근로자의 낮은 취업률/ 높은 급여의존율/ 높은 사회복지지출과 낮은 빈곤율
- 정치적 상황
  - 1999년 총선 결과, 플라미쉬 자유당의 Guy Verhofstadt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 출범
  - 경제의 효율성과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조화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표방
- 제도적 여건
  - 사회보장제도의 관대한 급여수준/ 높은 조세부담
  -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비중
  - 평균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지속적 하락
  -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여 왔으나, 계속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에 봉착

##### □ 제도 내용

- 적용대상
  - 근로소득의 정의에 따라 자영업 및 농어업 소득 모두 적용
  - 최소소득 기준 적용에 따라 연간소득 EUR 3,850(평균소득의 약 13%) 이하의 근로소득자 제외
- 자격요건
  - 개인단위 적용으로 인해 아동 및 가구와 관련된 기준 없음.
  - 근로소득이 적용범위 내에 해당할 경우 자격요건 충족
  - 근로소득 이외에 재산소득 등의 별도 기준 없음.
- 적용단위

- 개인단위 적용: 과세단위와 일치. marriage penalty 문제 해결, Second earner(특히,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유인 강조
- 가구단위 급여체계의 경우 targeting을 통한 목표효율성과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벨기에의 과세단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Second earner의 근로유인 감소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급여체계 및 급여산정방식
  - 미국의 EITC와 유사한 급여체계로 설계
  - 근로시간 조건은 없으나, 최소 근로소득기준은 있음.
  -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최대급여액 수준이 낮고, 적용소득 범위도 좁음.
- 점증구간의 급여증가율 및 점감구간의 급여감소율
  - 소득구간의 조정 없이 최대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점증구간의 급여증가율과 점감구간의 급여감소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

<표 III-6> 벨기에 In-Work Tax Credit (Credit d'impot) 급여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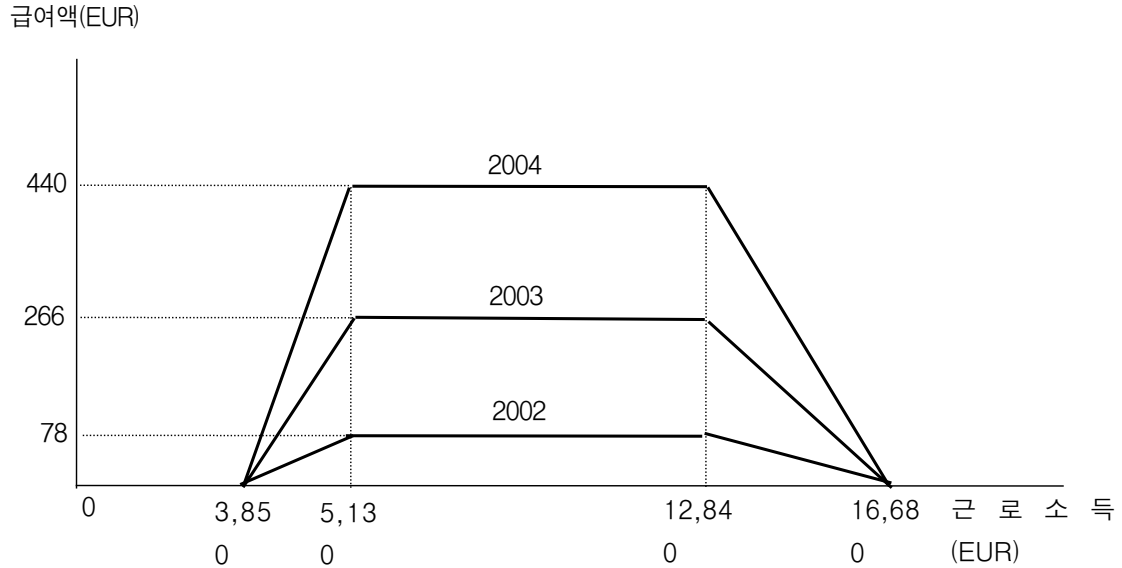
(단위: EUR, %)

연 도	최소소득 (APW 13%)	점증구간 (APW 17%)	급여 증가율	최대 급여액	평탄 구간 (APW 42%)	급여 감소율	점감 구간 (APW 55%)
2002	3,850	3,850~5,130	약 6%	78	5,130~12,840	약 2%	12,840~16,680
2003	3,850	3,850~5,130	약 20%	266	5,130~12,840	약 7%	12,840~16,680
2004	3,850	3,850~5,130	약 35%	440	5,130~12,840	약 12%	12,840~16,680
2005	3,970	3,970~5,300	약 40%	540	5,300~13,250	약 14%	13,250~17,230

주: 2002년 평균소득(APW) EUR 30,629



[그림 III-4] 벨기에 In-Work Tax Credit (credit d'impot) 급여체계



□ Tax Credit에 대한 평가

- 2002년 Credit D'impot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5년 동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계층의 사회보험료를 직접 감면하는 방식으로 전환
  - 폐지이유는 급여지급의 시차로 인한 근로유인 효과 미흡 때문임
- 벨기에는 개인단위 적용방식을 선호하였으며, 가구단위의 자산조사형 Tax Credit는 정책수단으로 선호하지 않음.
- 조세체계의 과세단위와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삶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 존중과 차별시정 차원에서 marriage penalty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최저임금의 대체를 위한 제도로서가 아니라, Tax Credit 제도와 최저임금의 상호보완이 중요함을 강조

5. 호주 Family Tax Benefit 및 Working Credit 제도

□ 도입목적

-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현재의 정부보조금 수혜자들로 하여금 임

- 시직, 비정규직, 또는 정규직을 구할 동기를 강화
- 취업이 되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최대 12주 동안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기간의 취업을 통해 퇴직한 후에도 보조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구직자가 최대 12주 동안의 짧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 단순화된 소득심사제도(income test)로 인해 어떻게 소득이 보조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언제 Centrelink에 신고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됨.

#### □ 제도내용

- FTB(Family Tax Benefit)제도는 가족보조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부양해야 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급
- Part A와 Part B로 나누어지며 중복적용 가능
- Working Credit은 연방정부가 저소득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곧바로 보조금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심사 대상 소득금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취업 후에도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

#### □ 자격요건

- FTB(Family Tax Benefit)제도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호주거주자이거나 FTB 목적에 적합한 특정비자를 소지한 자에 해당함.
- 자녀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소득보조금(income support)을 받고 있거나 16세 이상이고 교육제도(prescribed educational scheme)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다면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 사산아(stillborn child)인 경우는 FTB를 받을 수 없으나 아이가 태어난 후 곧 죽게 된 경우는 부양자녀에 해당함.
- 수령자와 자녀 모두 또는 둘 중 한 사람이 3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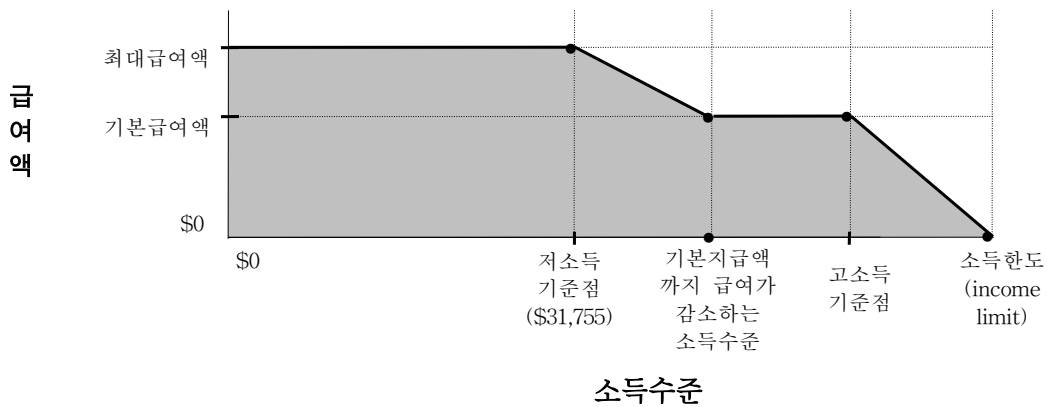
주한다면, FTB를 받을 수 없으며, 만일 수령자와 자녀가 26주가 지나서 호주로 돌아온다면, 돌아온 날부터 새로이 3년을 기산함.

- 고령연금(Age Pension)의 수급가능한 연령 미만이며 Centrelink 보조금 중 하나를 받고 있다면, Working Credit을 받을 수 있음.
- 고령연금(Age Pension)의 연령 이상이고 특별수당(Special Benefit)을 받는다면 Working Credit을 받을 수 없음.

□ Part A의 FTB 급여액

- 아래와 같이 한 명의 자녀당 최대 급여액(Maximum Rate)과 기본 급여액(Base Rate)이 정해져 있음.
  - <표 III-7>을 적용할 때, 부양자녀의 나이는 2004년의 경우 200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함.
- 만일 부양자녀가 소득연도 중에 25세가 되었다면 18세 이상 25세 미만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그림 III-5]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액



<표 III-7> Part A의 급여액(2004년)

자녀나이	최대 급여액 (Maximum Rate)	기본 급여액 (Base Rate)
13세 미만	3,401.80달러(287만원)	1,095.00달러(92만원)
13~15세	4,314.30달러(363만원)	1,095.00달러(92만원)
16~17세	1,095.00달러(92만원)	1,095.00달러(92만원)
18~25세 미만	1,470.95달러(124만원)	1,470.95달러(124만원)

□ Part B의 FTB 급여액

- Part B는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가장 나이가 어린 부양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또는 full-time 학생인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가 18세가 되는 연도말까지 지급됨.

<표 III-8> Part B의 최대 급여액(2004년)

자녀나이	연간 Part B 최대 급여액
5세 미만	2,920.00달러(246만원)
5세 이상 18세 이하	2,036.70달러(172만원)

□ Working Credit 급여액

- 구직수당(Newstart Allowance)을 받던 사람이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2주 동안 250달러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250달러에서 소득심사 면제점(income free area) 62달러를 제외하고 남은 188달러를 기준으로 구직수당급여액을 결정
- 이 경우 188포인트 이상의 Working Credit이 있다면, 소득심사 대상 소득금액이 0달러(=188-188)이므로 해당기간인 2주당 최대 구직수당급여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2주당 소득 62달러까지는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소득금액 이하에 해당되어 현재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적립된 Working Credit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직수당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감소됨.

<표 III-9> Working Credit에 따른 구직수당급여액(2004년)

Working Credit 적립포인트	소득심사금액 (income test)	2주당 구직수당급여액 <sup>1)</sup> 감소
188	0	최대 급여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음.
44	144	82달러당 50센트씩 감소하여 41달러 감소
0	188	46달러당 70센트씩 감소하여 32달러 20센트 감소

## 6. 뉴질랜드의 Family Assistance 제도

### □ 제도내용

- 18세 이하이고,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 가족보조는 다음 중 빠른 날까지만 지급
  - 자녀가 18세가 되는 연도말(달력에 따라 12월 31일)
  - 자녀가 재정적으로 독립한 날
- 가족보조는 가족수당(Family Support)의 세액공제(Tax Credit)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게 됨

1) 구직수당(Newstart Allowance)은 개인사정에 따라 다르며, 2주당 구직수당급여액은 다음과 같음. ① 독신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 394.6달러 ② 독신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426.9달러 ③ 독신이며 9개월 후에 60세 이상이 되는 경우 432.7달러 ④ 독신이 아닌 경우 1인당 356달러 씩

□ 자격요건

- 뉴질랜드 거주자로서 최소한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가족보조를 신청할 때에 납세자의 자격을 갖춰야 함.
  - 일주일에 30시간 미만의 근무만 가능하며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이나 다른 정부지원을 받지 않아야 하고 17세 이하이거나 18세인 경우 2학년이나 3학년 학생이어야 함.
- 뉴질랜드 거주자로서 현재 뉴질랜드에 있는 자녀를 양육(caring)해야 함.
- 주된 소득이 급여(benefit)가 아니라 일(working)을 통해 얻은 것이어야 함.
- 자영업(self-employed) 소득자인 경우 가족보조신청서(FS 1)에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차후 연도의 사업소득(business income) 추정액
  - 과거 연도의 사업금융계좌(business financial accounts) 사본
- 소득원천이 저소득급여(Income-tested Benefit) 하나뿐이라면, 가족수당(Family Support)만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의 일부로 근로·소득부(Work and Income)에서 지급함.

□ 운영 및 신청방식

- 가족수당(Family Support)은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지급
- 저소득급여(Income-tested Benefit)를 받는 경우는 근로·소득부(Work and Income)에서 지급
- 가족보조(Family Assistance)는 국세청(Inland Revenue)에 신청
  - 가족보조신청서(Family Assistance Registration)를 제출
- 가족보조(Family Assistance) 지급주기는 2주마다이거나 연도말에 일시불로 지급 중 하나 선택가능
- 2주마다 지급받는 경우, 가능한 정확하게 연간 소득을 추정해야 급여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연간 실제 소득을 계산한 결과 수급자가 추

- 정한 소득이 너무 낮을 경우 연도말에 지급받은 급여액을 반환해야 함.
- 연도말에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는 연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산정되므로 과대지급된 급여액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나, 연도말까지는 급여액을 받을 수 없음.

□ 급여액 지급방식

- 주된 자녀양육자(Principal Child Carer)의 은행계좌로 지급
- 일시불의 경우 수급자가 원하면 연도말에 수표로 받을 수 있음.

□ 급여액

- 2주마다 받는 경우 13세 미만의 모든 자녀는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제시한 기준표를 따름.
  - 자녀수가 6명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66,000달러를 초과한다면,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함.
  -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표 III-10> 2주마다 지급시 가족수당

자녀나이		가족수당(FS)급여액
13, 14, 15세 (단, 가장 연장자인 자녀 제외)		가족수당(FS)에 16달러씩 추가
16, 17, 18세	가장 연장자인 자녀	가족수당(FS)에 25달러 추가
	그 외 자녀	가족수당(FS)에 56달러 추가

- 일시불로 받는 경우
  - 가족보조(Family Assistance)를 일시불로 받으면 최대 가족수당(Family Support)은 다음과 같음.

<표 III-11> 일시불시 가족수당

자녀나이		가족수당(FS)급여액(자녀1인당)
자녀가 16, 17, 18세인 경우		연간 3,120달러(1주당 69달러)
가장 연장자인 자녀가 15세 이하인 경우		연간 2,444달러(1주당 47달러)
그 외 자녀가	13, 14, 15세인 경우	연간 2,080달러(1주당 40달러)
	12세 이하	연간 1,664달러(1주당 32달러)



## IV. 소득파악 현황 및 문제점

### 1. 근로소득

#### 가. 근로소득의 개념과 종류

- 근로소득은 세법에서 정해놓은 소득구분상 하나로 일반적 개념은 노동대가인 임금으로 법인(정부) 및 개인사업자 등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임
  - 근로소득은 지급자 기준이 아닌 받는 자 기준으로 사업자외의 자에게 (예: 개인) 노동을 공급하고 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함
    - 대리기사·퀵서비스와 같이 사업자와 관여되어 있으면서 소득지급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종도 있음
  
-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근로 유형은 근로시간, 고용계약, 급여계산 방법 등에 따라 「상근·일용·임시」로 구분되며 고용계약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용·임시)으로 구분
  - 최근에는 근로 환경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비율을 초과
  - 세법상은 3월미만 근로는 일용, 3월이상 근로는 상근
  - 노동관계법은 1월미만 근로는 일용, 12개월미만은 임시, 13개월이상 근로는 상근으로 분류
  
- 현행 법령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자의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에 의해 소득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는 특성을 고려해 제외

## 나. 근로소득 파악 현황

- 2003년 기준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소득파악률은 약 74% 수준
  - 통계청조사에 의한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자 1,440만명 중에서 약 1,062명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자료 보유
  - 임금근로자 중에서 소득미파악자는 약 377만명으로 전체근로자의 약 26%에 해당
  
-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약 380만명으로 주로 일용근로자와 과세 미달자인 상시근로자임
  -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과세미달자는 지급조서가 제출되지 않아 개인별 소득파악이 곤란(약 170만명)
  - 일용근로자(동일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는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어 있어 개인별 소득파악 곤란(약 210만명)
    - 일용근로자는 일당 8만원 초과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만 이행
    - 일용근로자의 종사분야는 건설, 음식·숙박, 교육(학원), 도·소매업종 등에 치중된 것으로 추정

<표 IV-1> 임금근로자 소득파악현황

(단위: 만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중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중 소득파악자	
		파 악	미파악
전체 근로자	1,440	1,062	<b>380</b>
상시근로자	1,227	1,062	<b>167</b>
- 상용	727		
- 임시	500		
일용근로자	213	-	213

주: 소득자료 미제출자는 대부분 일용 및 1년 미만의 임시직

## 다. 비사업자 지급 유형

- 첫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나 확인이 어려운 소득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으로 근로 사실은 확인되나 소득파악이 어려운 유형(예: 캐디, 접대부, 세차원, 킷서비스, 대리기사 등)
  
- 둘째, 특정 단체를 통해 근로제공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특정협회 또는 사업자에 등록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득지급자가 개인으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간병인, 파출부, 각종 도우미 등)
  
- 셋째, 사인간 거래로 확인이 불가능한 소득
  - 순수한 사인간의 거래로 근로사실·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유형(예: 집꾼, 자가용 운전사, 농업 일꾼 등)

## 라. 근로소득 파악의 문제점

- 일용근로자 약 210만명에 대한 소득파악장치 없음
  - 일용근로자는 소득파악 장치인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음
  
- 생계형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작성·제출이라는 세무절차를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
  
- 비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확인 불가능

## 2. 사업소득

### 가. 종합소득세 과세기반의 취약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등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과거에 비하여는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근로소득자에 비하여는 저조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이 문제가 됨
  -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비율이 저조하여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간의 수직적 및 수평적 형평성제고에 한계로 작용
  
- 무기장자와 추계과세자의 비율이 낮아 근거과세의 기반을 침해
  - 소득세의 무기장자 비중은 199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무기장자의 비율은 여전히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자의 비율보다 높음
    -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확정신고자 중에서 근거과세자의 비율은 약 47.3%에 지나지 않고 무기장으로 인한 추계과세인원의 비율은 절반을 넘는 52.7%를 차지

<표 IV-2> 연도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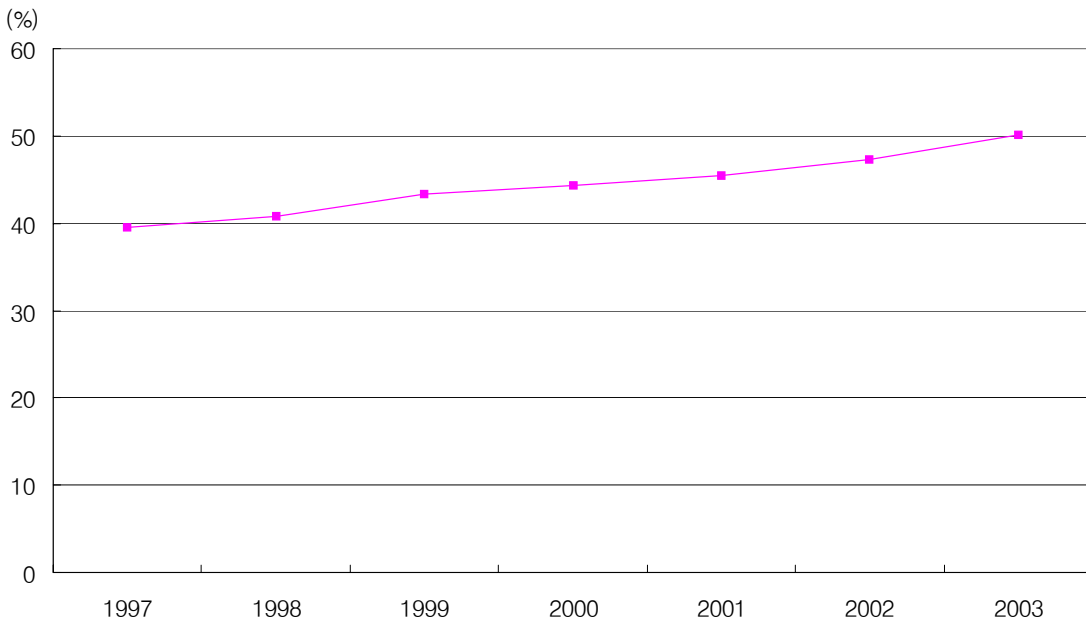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 귀속연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확정신고인원 <sup>1)</sup>	1,299,442	1,225,614	1,342,153	1,616,244	1,782,369	2,010,363	2,114,527
○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인원(A)	504,933	495,045	572,904	679,536	790,224	918,803	1,018,068
• 근거과세인원 비율(A/A+B)	39.6	40.8	43.3	44.3	45.4	47.3	50.1
○ 추계신고인원(B)	769,726	717,950	748,762	856,124	950,665	1,023,137	1,012,943
• 추계인원비율(B/A+B)	60.4	59.2	56.7	55.7	54.6	52.7	49.9
○ 사업소득·부동산소득 이외의 합소득자(C)	24,783	12,619	20,487	80,584	41,480	68,423	83,516
• 비사업자인원비율(C/A+B+C)	1.9	1.0	1.5	5.0	2.3	3.4	3.9

주: 1) 추계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는 제외된 인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그림 IV-1] 연도별 종합소득세 근거과세자 비율 추이



- 장부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자가 납부한 세부담은 전체 결정세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신고인원의 약 52.7%에 달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의 세부담 점유비는 29.3%(추계신고자 19.3%와 비사업자 10% 포함)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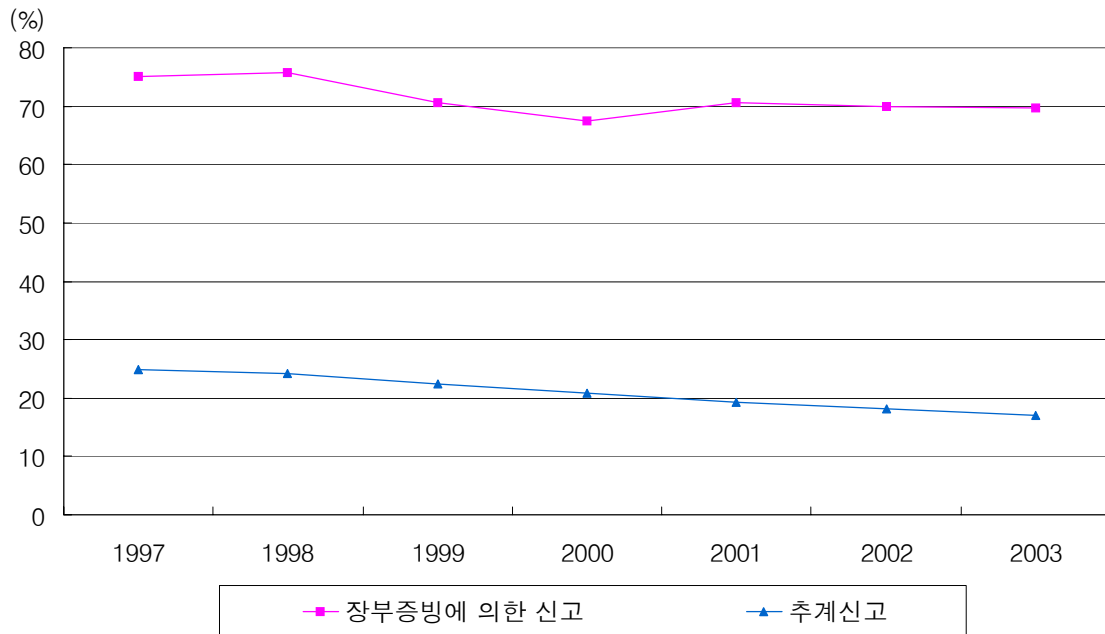
<표 IV-3> 유형별 소득세신고 현황(2003년 귀속)

(단위: 천명, 10억원, %)

신고유형		구 분	신고인원	구성비	결정세액	구성비
기장 신고	복식장부		514	24.3	3,914	62.2
	간편장부		504	23.8	475	7.6
	소 계		1,018	48.1	4,390	69.8
추계신고 <sup>1)</sup>			1,096	51.9	1,899	30.2
합 계			2,115	100.0	6,289	100.0

주: 1) 추계신고에는 비사업자(이자·배당소득자 등) 포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그림 IV-2]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세부담 구성비



- 단순경비율법에 따른 소득세의 산정 및 부과는 사실상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다를 바가 없고 현행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단순경비율에 위한 추계과세사업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표 IV-4> 업종별 기장의무 구분

(단위: 만원)

업종구분	연도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0,000~ (60,000~)	4,800~30,000	15,000~	~15,000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15,000~ (30,000~)	4,800~15,000	9,000~	~9,000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7,500~ (15,000~)	4,800~7,500	6,000~	~6,000

- 주: 1. 복식부기의무자 중 ( )안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외부조정대상자임.  
 2. 상기 수입금액은 매출액 등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임.  
 3.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적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

#### 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 과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비율이 과다하여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음
  - 사업자의 약 48.8%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 자로 거래단계별 수입금액이 파악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약 86.3%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신고의무도 해태

<표 IV-5>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현황 (2003.2기)

(단위: 명, %)

합 계	일반과세자		간 이 과 세 자					
			소 계		납부대상자		납부면제자	
	인 원	비율	인 원	비율	인원	비율	인 원	비율
3,635,511	1,861,707	51.2	1,773,804	48.8	243,434	6.7	1,530,370	42.1

- 자영업자의 약 50%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으로 소득과약이 취약한 분야임
  - 음식·숙박업, 운수업, 서비스업, 교육, 보건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대부분임

### 3. 자영 농어민

- 경제활동인구상 농림어업종사자는 1,950천명이며 이중에서 자영농어민 1,183천명임(농어업근로자 162천명, 무급가족종사 농어민 605천명 제외)
  - 소득과약이 필요한 자영농어민 1,183천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연근해 어업, 양식업, 축산업 등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나, 농민소득의 대부분인 농업소득(농작물재배소득)은 지방세임
    - 농업소득세는 2003년 약 21,524명(2%)에게 37억원 징수



#### 4. 이자·배당·임대·연금소득

- 이자·배당·임대·연금 소득 자료의 보유비율도 낮은 수준
  - 이자분배소득은 국민계정상 46조이나 국세청 자료제출대상 이자총액은 26조로 금액기준 국세청 소득자료 보유율은 약 57% 수준
  - 배당분배소득은 국민계정상 6.9조이나 국세청 자료제출대상 배당총액은 3.8조로 금액기준 국세청 소득자료 보유율은 약 55% 수준
  - 임대주택은 2주택까지 비과세
  
- 소득보유율이 낮은 주요원인은 저축, 배당 등 금융상품에 대한 다양한 세 금우대 및 비과세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면제 등에 기인
  - 연금소득은 현재 과세실익이 없어 지급조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
  - 소액의 기타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
  
- 그러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경우 소득과약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공공기관간 자료협조나 제도개선을 통해 소득과약이 가능
  - 직접적 소득과약이 어려운 경우에도 재산의 규모과약을 통해서도 EITC 제도 도입에 필요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 ※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보유여부의 과약은 용이

<표 IV-6> 주요 소득과약 장치 및 자료제출 의무 현황

소득	종류	소득과약 수단	소득지급(발생)	자료제출
이자	채권, 증권, 예금이자	지급조서(원천징수)	금융기관	○
	비과세 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	금융기관	×
	장기채권이자 중 분리과세	지급조서(원천징수)	금융기관	×
	30만원 미만 계좌 이자	지급조서(원천징수)	금융기관	×
	계좌별 연3만원 미만 이자	지급조서(원천징수)	금융기관	×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	지급조서(원천징수)	금융기관	×
	비 영업대금 이자	지급조서(원천징수)	이자지급자	×
배당	상장, 코스닥주식 배당	지급조서(원천징수)	예탁원	○
	비상장주식 배당	지급조서(원천징수)	배당법인, 예탁원	○
	1년이상 보유주식 배당	지급조서(원천징수)	배당법인, 예탁원	×
	기타비과세 배당 등	지급조서(원천징수)	배당법인, 예탁원	×
부동산 임대	임대소득	세금계산서, 소득신고	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소득(3채이상)	지급조서(원천징수)	임대자	×
	전답임대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	임대자	×
사업	제조, 도소매, 음식 등	세금계산서, 소득신고	사업자	○
	비과세(농가부업)	-	소득자	×
근로	연말정산(갑근, 을근)	지급조서(원천징수)	임대자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원천징수)	임대자	×
일시 재산	권리 등의 양도, 서화·골 동품의 양도	세금계산서, 신고	양도자	○
기타	원천징수 대상	지급조서(원천징수)	사업자 등	○
	과세최저한 금액	지급조서(원천징수)	사업자 등	×
연금	과세대상('02년 이후) 과세제외	지급조서(원천징수)	연금공단	×
퇴직	갑종, 을종 퇴직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	사업자	○
양도	부동산매매(1세대1주택)	부동산 등기자료	등기소	○
	주식매매(상장, 코스닥)	-	증권거래소	×

## V. EITC 도입시 집행가능성

### 1. EITC 집행가능성과 소득과약

- EITC 집행가능성과 소득과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
  - EITC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므로 EITC 적용여부 및 급여액 산정을 위해 가구원 개개인의 소득과약이 필수적
  - 가장 중요한 과약대상 소득은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본 정보인 일을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임
    - 자산소득과 이전소득이 많으면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도 함께 과약할 필요
    - ※ 자산소득을 직접 과약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규모를 통한 간접적 과약도 가능
  
- 소득과약을 위해서는 사업자(법인/자영자)의 매입·매출의 정확한 기장과 거래증빙 노출이 필수적임
  - 증빙이 필요한 주요 매입비용으로는 피용자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이 해당
    - 피용자 인건비는 근로자 임금과약 여부와 직결
    - 임차료는 임대소득 과약과 직결
    - 재료비는 재료 생산자 또는 중개자의 매출 과약과 직결
  - 신고 및 거래증빙자료 양성화를 위한 행정부담 최소화와 국민들의 납세관행이 함께 개선되어야 효과적
    - 거래증빙자료(적격영수증 등)는 신고 및 기장내용의 검증장치
  
- 소득과약은 EITC 도입을 위해서 필수적이거나, EITC의 도입여부와 관계없

이 사회복지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소득과약은 대상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필수적
-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필수적

## 2. 도입시 집행가능성

□ 소득과약 수준과 신뢰성이 낮아 전면 도입은 어려움

- EITC를 시행할 경우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해야 할 대상은 약 20,444천명으로 이 중 15,198천명에 대해 국세청이 자료를 보유(74%)
- 국세청 소득자료 보유자중 신뢰성 있는 소득과약장치 보유자는 약 12,018(59%)~13,031천명(64%)으로서 근로자는 74%, 자영자는 29~49%이며 농어민은 소득과약이 어려움
  - 임금지급조서에 의해 소득이 파악되는 근로자 10,626천명
  - 자영자 중 기장사업자 1,018천명과 원천징수 대상자(보험모집인 및 방판매원 등) 374천명

<표 V-1> 종사상 지위별 소득자료 보유율

	합계	근로자	자영자	자영농어민
소득과약 대상(A)	20,444천명	14,402천명	4,859천명	1,183천명
국세청 보유자료(B)	15,198천명	10,626천명	4,550천명	22천명***
소득과약장부기장자(C)	12,018천명 ~13,031천명	10,626천명	1,392~2,405천명	-
주요소득과약장치	-	임금지급조서	기장/지급조서*	-
소득자료 보유율(B/A)	74%	74%	94%	2%
소득과약장치 보유율(C/A)	59~64%	74%	29~49%**	0%
주요 누락자	-	일용근로자, 과세미달자	간이과세자 과세미달자	농작물재배 농민

\* 인적용역제공자인 특수고용직종사자(374천명)

\*\* 추계신고자를 포함할 경우 49%에 해당

\*\*\* 농업소득세(지방세)자료는 지자체 보유

### 가. 근로소득자

-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경우 근로소득자부터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도입은 가능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자료 보유율이 74%에 이르고, 신뢰성도 높은 수준으로 제도개선과 철저한 시행준비를 통하여 소득자료 보유율을 88%까지 제고할 수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자가 고용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사를 통해 관리가 가능
  - 제도개선과 함께 소득과약 개선을 위하여 제도시행 초기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및 늘어난 지급조서의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확충해야 함

## 나. 근로소득+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가 동시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 근로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2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사업소득자는 강화된 소득신고를 조건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강화된 소득신고 요건으로는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적용(간이과세자격 포기, 매입과약)
    - 간편장부의 기장 및 적격영수증을 통한 지출 증빙(일정비율 이상) 등이 있음
  - 사업소득자의 사회보험료 우선 납부를 부정수급 방지장치로 활용
    - 사회보험료 수준의 EITC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EITC 지급전 사회보험료를 우선 정산하는 경우 자영자는 EITC 급여를 수령해도 실질소득의 증가는 없음
  
- 둘째, 비교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음
  - 일단 사업소득에 대해 EITC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만 있는 가구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있는 가구의 사업소득도 급여산정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
    - 급여가 증가하는 등 유리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감소하는 등 불리한 경우에는 합산

## 다. 자영업자

-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추이, 기장의무자 확대 등 근거과세의 기반이 마련되는 정도에 따라 도입여부 판단

## 라. 농어민

- 농어민에 대한 EITC 적용은 신중히 고려
  - 농어민에게는 구조조정 지원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대책 추진중
    - 직불제, 농업소득세 부과중지('05년부터 5년간), 면세유류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보육료·교육비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 시행중
  - EITC 적용시에는 가구단위 소득과약과 함께 직불제 등 현행 지원정책과의 조정도 함께 검토가 필요
    - 직불제는 현재 농가가구의 소득이 아닌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하여 소득과약체계로는 활용이 곤란

## 3. 집행가능성을 위한 개선과제

### 가. 세제상 개선과제

- 모든 소득발생시 자료 생성·수집·관리 원칙을 확립해야 함
  - 모든 근로자는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 상용근로자의 경우 저소득근로자도 원천징수를 실시하고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
    - 일용근로자의 경우 8만원 초과액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던 것을 모두 지급조서 제출하도록 함
  
- 영세사업장의 자영자와 소속 근로자의 소득과약을 위해서는 매출과 주요 경비를 노출하기 위한 간편장부의 기장대상 확대가 필수적
  - ※ 기타 경비는 통계적인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의 단계적 축소
  - 간이과세제도는 거래단계별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등으로 매출규모 신

퇴성을 떨어뜨려 전반적으로 자영자 소득과약을 어렵게 함

-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과 이전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범위 확대
  - 가구별 총소득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과세 소득, 공적 이전소득(연금소득 등), 사적 이전소득(민간보험회사 등의 연금지급)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제도 도입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소득과약체계 개발
  - 현재 농작물의 재배면적 및 영농형태(주요 재배농작물) 등에 따라 소득 추계방법이 있으나 빈곤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가구별 소득과약체계 개발 필요
  
- 납세 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
  - 지급조서 제출 시기를 구분하여 상시근로자는 연1회, 일용근로자는 고용관계 종료시 제출
  -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제출로 인한 행정부담을 경감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근로자의 임금누락을 초래하는 임금지급조서나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제도 강화
  
- 소비, 재산, 근로자 변동 등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 확대
  - 파악된 소득과 비례하지 않는 소비지출, 자산보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득과약의 신뢰성 제고
  - 원천징수 이행상황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사회보험의 사업장별 근로자 변동 자료 활용 검토



## 나. 세정상 개선과제

- 임시·일용직이 주 대상에 포함될 EITC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업장별 인별 소득자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EITC를 위해 비정규직(임시, 일용 등)의 경우 노동 공급관계의 종료 또는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조서가 관리되어야 함
    - 현재는 사업장별로 무조건 1년에 한번씩만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표 V-2> 비정규직 규모

계	정규직	비정규직
14,149천명	6,184천명(43.7%)	7,965천명(56.2%)

<표 V-3> 공사현장 근로기간별 건설 일용근로자 비율

1월미만	1~2개월	3~12개월	1년이상
16.2%	19.9%	30.5%	33.4%

주: 2003년말 현재 건설일용근로자 약 106만명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기본현황의 확인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자의 자가 여부, 종업원수, 급여지급방법 등과 고용기간, 고용형태 및 급여수준을 확인해야 함
  -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되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EITC 수급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현재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부처와 전산망을 직접 연계하거나 국세청이 직접 서버를 구축하고 자료를 통보받아 전산시스템 구축

※ 외부기관 자료는 법령보완 후 구축

<표 V-4> 주요 전산구축대상

구축항목	구축내용
지급조서(일용 등)	▪ 근로기간·지급액 등
이자·배당	▪ 비과세 이자내역 등
부동산 보유	▪ 토지·건물(상가 등) 모든 부동산
신용카드내역 등	▪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
가구 현황	▪ 가구별 세대원 구성 현황 등
가구별 신고현황	▪ EITC가구별 소득신고 현황
기초생활보호자	▪ 기초생활보호자의 주민번호 내역

- 소득과약 인프라구축 법령이 마련되면 사업자를 통한 소득과약률 제고 장치가 필요
  - 소득과약 인프라가 구축되면 소득과약률은 증가할 것이나, 시행초기부터 괄목할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임
  - 자발적인 소득과약률 제고 협력은 세무능력 및 납세순응도에 따라 상이하나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과제
  - 결국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세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홍보위주의 행정력 투입 필요

## VI. EITC 도입과 관련한 주요 검토과제

### 1. 도입효과

#### [단계적 도입론] 근로빈곤층의 빈곤완화 및 근로의욕제고

- 고용시장의 변화와 소득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EITC 도입 필요
  - 빈곤층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다 최근 증가, 빈부격차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 \*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율 : 9.4('99), 5.2('02) 6.1('03), 6.0('04)
    - \*\* 5분위배율(배): 5.49('99), 5.18('02), 5.22('03), 5.41('04)
    - 지니계수 : 0.320('99), 0.312('02), 0.306('03), 0.310('04)

#### [신중론] 근로의욕제고 효과 불확실

- EITC를 도입한 미국의 실증연구를 보면 편모가정과 같은 일부 계층에서는 제한적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였으나
  - \* 자녀 있는 편모의 근로활동참가율이 50% 이상 증가(Meyer & Rosenbaum, 98년)
  - 가구단위로 소득이 합산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2차 소득자(second-earner)의 노동공급(주로 여성)이 감소
    - \* 주로 2차소득원인 부인의 근로시간이 감소(Eissa & Hoynes, 98년)
  -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있는 편모가구 비율이 외국에 비해 낮아 노동공급 증가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 \* 편모가구 비율 : 한국 6.4% 미국 15% 영국 19%

## 2.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단계적 도입론] : 초기단계에 제한적으로 운용시 재정부담 적음

- 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초기재원소요는 0.5~1조원 내외로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음
- 소요재원은 각종 비과세·소득세 감면 확대 억제 등을 통해 마련
  - \* 연도별 소득세 경감규모 (조원)  
(00년) 1.2 (01년) 1.5 (02년) 0.3 (03년) 1.3 (04년) 1.4

[신중론] :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큼

- 향후 완전한 시행 단계의 재원추정과 조달이 전제되는 것이 필요
  - 아동 없는 가구와 자영자를 포함할 경우 2조원 이상 소요 전망
    - \* 미국과 영국수준(GDP의 0.3~0.4%)으로 지급시 2~3조원 소요
  - 정치적인 이유로 수급대상자가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재원소요 규모는 큰 의미가 없음
- 비과세·감면 축소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이 근로자, 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에 집중되고 있어 실제 축소가 쉽지 않은 실정
  - 매년 이루어지는 소득세 감면도 현행 초과누진구조하의 소득세 체계하에서 적정 세부담 유지를 위해 불가피

<표 VI-1> 기능별 조세감면 실적

	중산서민층 지원	경제개발지원	사회개발지원	기 타	합 계
03년 실적	7.9조원	6.2조원	2.6조원	0.8조원	17.5조원
(구성비)	(45%)	(35%)	(15%)	(5%)	(100%)

### 3. 도입시기

[단계적 도입론] 집행가능한 적용대상부터 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보완

- 근로자가구는 2~3년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소득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일단 실시
  - \* 지급조서 제출제도 강화 등 법령 보완 및 밀착행정 등을 통해 현재 74% 수준의 소득자료 보유율을 88%까지 제고 가능할 것으로 추정(국세청)
  - 자영자가구도 제도 운영 시행초기부터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확대
  - \* 현 시점에서 소득파악 제고효과 추정이 곤란

[신중론] : 5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

- 소득파악률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조기 도입시 부정수급\* 등으로 혼란 및 불형평 초래
  - \* 미국의 부정수급 : 90억불 내외, EITC 지급액의 30% 수준 (IRS 조사, 02년)
    - 소득 불성실신고에 의한 부정수급은 10% 수준
  -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더라도 정치적인 문제, 근로자와 사업자간 형평성 등으로 자영자에 대한 조기 실시 불가피

##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의 적용방법

### [단계적 도입론]

- 사업소득은 소득신고요건 강화를 조건으로 적용하고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자영자의 사회보험료를 우선 정산
  - ※ 간이과세자격 포기, 사업장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적격영수증으로 일정비율 이상 지출 입증 등의 요건을 이행하는 조건. 운영결과에 따라 요건을 완화 또는 강화
  - ※ 급여수준이 사회보험료 수준이므로 최대급여를 받아도 자영자는 사회보험료 납부후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고 신고소득요건도 강화(연금보험료 9%,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4.3%이나 소득 외에 재산 등도 보험료부과 시 고려됨)
- ⇒ 이를 자영자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운영(자영자 확대 가능성을 비전으로 제시하여 자영자 반발 완화)

### [신중론]

- 비교급여체계 적용
  - 사업소득은 적용여부 및 급여증감에서 불리한 경우에만 합산

## 5.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 관계

### 가. 검토가능 대안

- 1) 제1안: EITC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 대해 적용하고 현행 자활장려금 제도는 조정·폐지

□ 장점

-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 및 소득보전 효과
- 기초보장수급자의 자격변동이 심한 현실에서 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관리 운영이 용이

□ 단점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과도한 급여라는 비판

2) 제2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EITC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적용

- ※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EITC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

□ 장점

- 근로를 중시하는 사회윤리의식의 상징성 강화

□ 단점

- 기초보장수급자가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약화됨
- 수급과 비수급을 수시로 오고가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 행정이 복잡해짐

## VII. 도입시 검토가능 모형

### 1. 적용대상 및 급여수준 설정방향

- 아동을 양육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내외까지 적용(최저생계비의 140~160%)
  - 아동 없는 가구도 지원이 필요하나, 도입 초기에는 아동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
    - \*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약 50% 수준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가구도 포함
    - \* 특수고용직 종사자: 자영자로 분류되나 인적용역만을 제공하여 근로자와 같이 취급되는 자(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발급, 약 37만명)
    - \*\* 자산소득 및 이전소득이 많은 가구 제외를 위해 총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설정
  
- 급여수준은 사회보험료 수준을 지급
  - 최대급여구간은 미국 등의 급여구간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탈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



## 2. 검토 모형

### 가. 모형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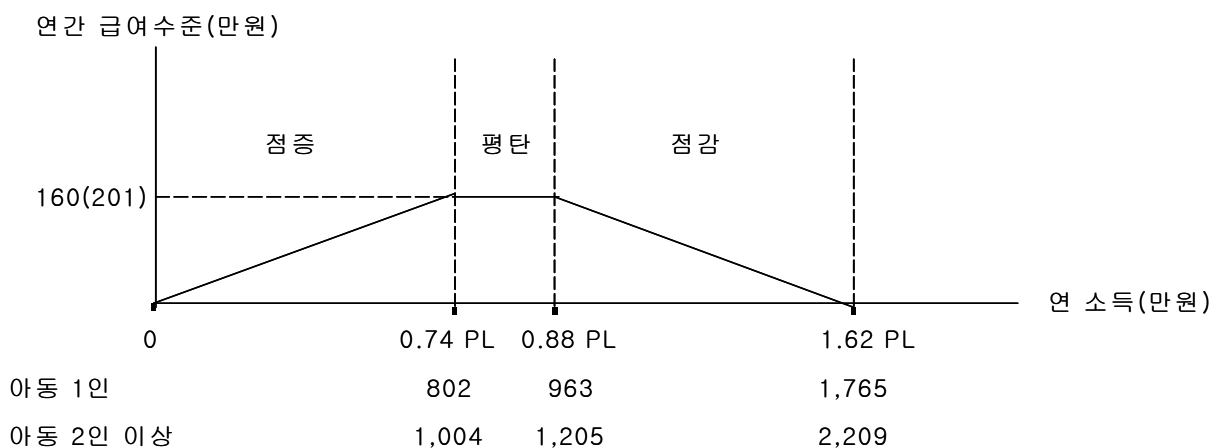
- ① 최대급여액 : 연간 201만원, \* 4인가구 기준
- ② 소득구간 : 최저생계비 162% 수준
- ③ 급여율 : 점증구간 20%, 점감구간 20%

#### 1) 급여모형의 형태

-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는 점증구간을 두어 기초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수급빈곤층에 적용
- 점증구간 이후 가처분소득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한 근로유인의 감소방지를 위해 평탄구간과 점감구간(급여감소율 20%)을 둠

[그림 VII-1] 모형 A: 20%-20%(2005년 기준)

#### < 모형 A : 20%-20% (2005년 기준) >



## 2) 점증구간 급여증가율 및 점감구간 급여감소율

-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점증구간의 급여증가율을 20%로 도입 하되, 제도 안정화에 따라 단계적 인상 검토
  - ※ 사회보험료 부담수준 : 15.8%  
(국민연금 9%, 건강보험 4.3%, 고용보험료 0.9%, 산재보험료 평균 1.6%)
- 점감구간의 급여감소율도 급여증가율과 동일한 20%로 설계
  - 외국의 경우에도 2차소득자의 근로의욕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급여감소율을 낮게 설정하고 있음(미국 21.7%, 영국 37%)
  - 우리의 경우, 점감구간에서 사회보험 및 조세에 의해 급여감소율이 높아질 요인이 적고, 급여수준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아 노동공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임

## 3) 점증구간 상한소득 : 최대급여액

- 가구단위 적용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빈곤과 관련된 대표적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를 활용하여 구간을 설정
  - 미국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용
- 최저생계비에서 모든 현물급여를 제외한 소득(생활비기준선)으로 점증구간의 상한소득을 설정: 최저생계비의 74% 수준
  - 즉, 교육, 의료, 주거 등 기초적·필수적 복지가 제공되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는 수준
  - 기초보장 수급자가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를 갖게 되는 소득수준
  - ※ 교육 및 의료급여 등에 대한 욕구가 없거나,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일부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는 등 향후 기초적·필수적 복지가 확충될 경우, 기초보장제도에 남아있을 유인이 없는 소득수준의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가처분소득이 동일 또는 감소되지 않는 수준

- 아동 1인가구는 3인가구 최저생계비의 73.6%인 월 669천원(연 802만원), 아동 2인 이상인 가구는 월 837천원(연 1,004만원)을 점증구간 상한소득으로 설정
- 이 경우 최대 급여수준은 아동 1인가구는 월 134천원, 연 160만원, 아동 2인 이상인 가구는 월 167천원, 연 201만원
- 점증구간 상한소득에서 최대급여를 받으면 최저생계비의 90% 수준

#### 4) 평탄구간 상한소득

- 평탄구간 상한소득은 점증구간 상한소득의 120% 수준으로 설정(최저생계비의 88.4% 수준)
  -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현금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선인 최저생계비의 85% 수준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까지 최대급여액을 유지
  - 외국의 평탄구간 폭(평탄구간 시작점의 125~130%)을 고려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잠재적 빈곤층으로 도입하고 있는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 개념을 적용
- 평탄구간 상한소득은 아동 1인가구는 월 802천원(연 963만원), 아동 2인 이상 가구는 월 1,004천원(연 1,205만원)
- 평탄구간 상한소득에서 최대급여를 받을 경우 최저생계비의 103% 수준이 되어 최저생계비를 초과
  - 자활장려금(30%)을 받는 일부 기초보장 수급자와 비교할 경우 급여수준은 낮음

#### 5) 점감구간 상한소득 (EITC 적용 상한소득)

- 점감구간 상한소득은 급여감소율을 급여증가율과 동일한 수준인 20%로

- 적용할 경우 최저생계비의 162%에 해당(중위소득 60%)
- 아동 1인 가구 월 1,470천원(연 1,765만원), 아동 2인 이상 가구는 월 1,841천원(연 2,209만원)
  - 점감구간 내 소득세 면세점(4인가구 연 1,582만원)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부담(8% 가정)을 고려한 실질 급여감소율은 28%로 높아져 실질 상한소득(수지균형점)은 2,007만원으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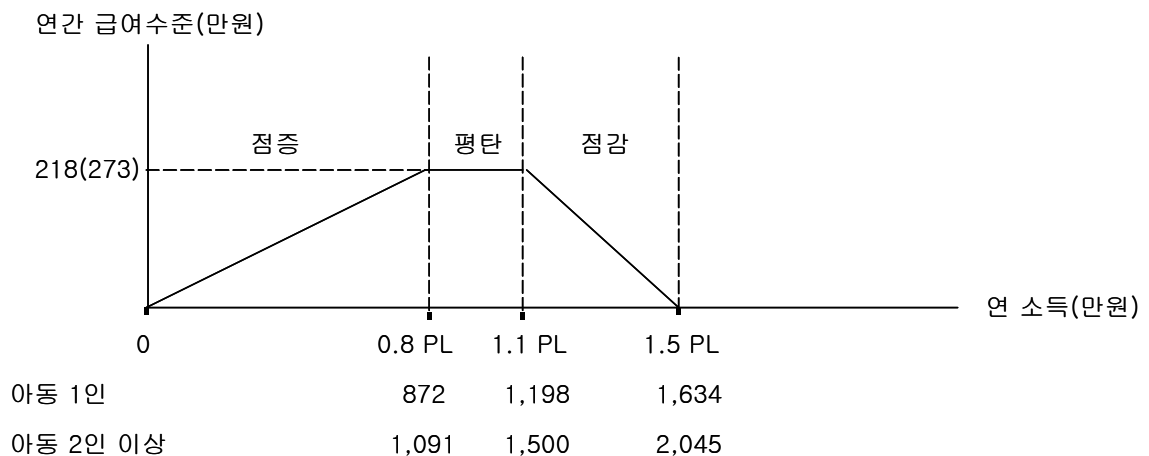
## 나. 모형 B

- ① 최대급여액 : 연간 273만원, \* 4인가구 기준
- ② 소득구간 : 최저생계비 150%수준
- ③ 급여율 : 점증구간 25%, 점감구간 50%

### 1) 급여모형의 형태 : 모형 A와 동일

[그림 VII-2] 모형 B: 25%-50%(2005년 기준)

< 모형 B : 25%-50% (2005년 기준) >



## 2) 점증구간 상한소득 및 급여증가율, 최대급여액

- 점증구간의 급여증가율을 25%로 하고 점증구간의 상한소득을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으로 설정
  - 점증구간 상한소득에서 최대급여액 수령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와 일치하도록 하여 EITC 수급 후 빈곤선을 탈피하도록 설계
- 점증구간 상한소득은 아동 1인 가구 월 726천원(연 872만원), 아동 2인 이상인 가구는 월 909천원(연 1,091만원)
- 최대 급여수준(급여증가율 25%)은 아동 1인 가구가 월 182천원(연 218만원), 아동 2인 이상 가구가 월 227천원(연 273만원)

## 3) 평탄구간 상한소득

- 평탄구간의 상한소득을 최저생계비의 110%로 설정
  - 각종 현물급여가 주어지는 차상위계층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함으로써 급여 후에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을 벗어나도록 설정
  - 아동 1인 가구 월 999천원(연 1,198만원), 아동 2인 이상 가구 월 1,250천원(연 1,500만원)을 점증구간 상한소득으로 설정
- 평탄구간 상한소득에서 최대급여액을 받을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로 빈곤예방이 가능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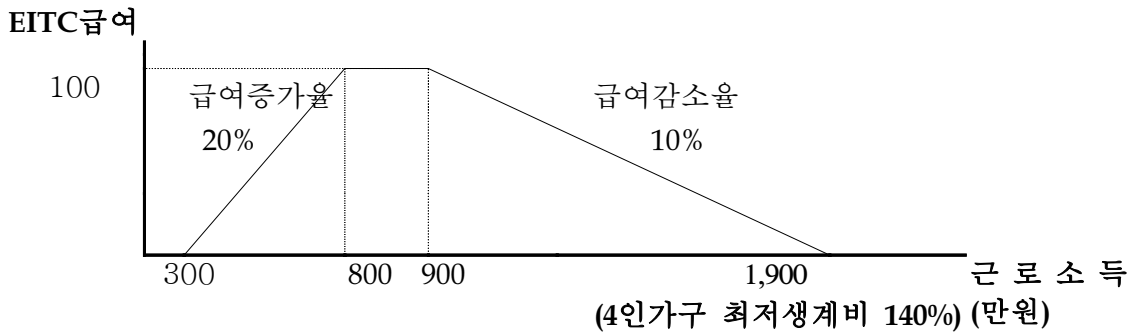
## 4) 점감구간 상한소득(EITC 적용범위) 및 급여감소율

- 적용범위는 중위소득 60%보다 낮은 최저생계비 150%로 설정
  - 아동 1인가구 월 1,362천원(연 1,634만원), 아동 2인 이상인 가구는 월 1,704천원(연 2,045만원)
- 점감구간 급여감소율은 점증구간과 평탄구간을 독립적으로 결정한 후 적용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가 되도록 50%로 설계

### 다. 모형 C

- ① 최대급여액 : 연간 100만원 (월 8.3만원), \* 4인가구 기준
- ② 소득구간 : 최저생계비 140%수준 (4인가구)
- ③ 급여율 : 점증구간 20%, 점감구간 10%

[그림 Ⅶ-3] 모형 C (아동 2인)



<표 Ⅶ-1> 도입타당성 검토모형 개요 비교

구분	급여 증가율	점증구간 상한	평탄구간 상한	급여 감소율	적용구간 상한
모형 A	20%	최저생계비의 74%	최저생계비의 88%	20%	최저생계비의 162%
모형 B	25%	최저생계비의 80%	최저생계비의 110%	50%	최저생계비의 150%
모형 C	20%	최저생계비의 58%	최저생계비의 66%	10%	최저생계비의 140%

## 라.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타당성 검토모형별 비교

- 모형 A는 최저생계비 중 현물급여를 제외한 수준에서 최대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증감률을 20%로 함
  - 적용대상 약 100만 가구 내외, 최대급여액 약 200만원
  - 연평균급여액 약 95만원 내외, 소요재원 약 1조원 내외
- 모형 B는 최대급여를 받는 지점에서 소득과 급여를 합쳐 최저생계비가 되도록 하고 적용범위를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한정
  - 적용대상 약 95만 가구 내외, 최대급여액 약 273만원
  - 연평균급여액 약 150만원 내외, 소요재원 약 1.5조원 내외
- 모형 C는 미국제도를 고려하되 미국과의 구매력 격차(47%)를 반영하고 급여수준은 장애연금과 경로연금을 감안 설계
  - 적용대상 약 80만 가구 내외, 최대급여액 약 100만원
  - 연평균급여액 약 50만원 내외, 소요재원 약 0.5조원 내외
  - ※ 도입 초기 낮은 수급률(50~70%)을 고려시 소요재원 감소
  - ※ 30여년간 제도를 운영한 미국은 수급률 76~85%, 영국은 수급률 90%로 매우 높으나 한국의 고용보험 수급률 약 50% 미만 수준

### □ 분석상 한계

- 추계의 사용된 행정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등이 자체적인 한계를 지님
- EITC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대상자의 노동공급의 변화가 없는 정태적 모형에 기초하여 추정
- 추계에 사용된 행정자료의 경우, 누락된 약 377만명의 일용근로자 Data 없이 나머지 Data를 가지고 추계
  - 소득과약에 누락된 일용근로자 대부분이 EITC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일용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소요재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VIII. 결 론

- 현재의 소득과약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하여 제도도입부터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 소득과약이 가능한 집단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소득과약률이 개선됨에 따라 적용범위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자와 비적용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초기에는 소득과약이 비교적 용이한 근로자가구부터 적용하고, 점차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
  - 1단계는 근로자 가구이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 적용
  - 2단계는 근로자 가구이며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 적용
  
- 임금근로자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근로자 14,402천명 중 약 74%인 10,626천명에 대하여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보유
  - 임금지급조서를 통해 파악된 소득자료는 신뢰성이 높음
  - 소득과약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약 3,776천명으로 주로 일용근로자로 추정됨
    - 일용근로자는 주로 건설업, 음식·숙박업, 교육(학원), 도·소매업에 집중
  
-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경우 임금근로자의 경우 현재의 74%에서 8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소득과약 개선과 함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
  
- 사업자를 통해 관리가능한 근로소득의 경우 집행가능하며, 캐디 fee 등 사업자가 개입된 특수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가능



- 부가가치세제의 개편 등 세제 및 기타 법령의 정비와 원천징수의무 확대, 지급조서제출방식의 다양화 등 세정장치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함
  -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홍보위주의 밀착행정 필요
-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우선 적용할 경우에도 인별 인프라구축 및 점검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예: 2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EITC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인별 소득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령을 보완한 후에도 납세자의 순응도를 감안한 적응시간이 소요
- 사업소득의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도입여부 및 시기 판단
- 사업소득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제도 도입시 기본원칙
- 정책목표와 Targeting Group의 명확화
  - 제도의 단순화
  - 급여단위는 가구단위가 바람직
  - 급여수준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출발하고, 제도 정착과 더불어 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인상

## 참고문헌

-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1.
- 김재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 김재진·권오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조세정책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2001.
- 박능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2000.
- \_\_\_\_\_, 「EITC 특성과 소득보장기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4월호.
- \_\_\_\_\_,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정책: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의의와 도입 설계를 중심으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토론회 자료, 2004. 9.
- 보건복지부,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1.
- \_\_\_\_\_,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법령집』, 2000. 8.
- \_\_\_\_\_,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재할프로그램 안내』, 2001.
- \_\_\_\_\_,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참여복지체계 구축방안』, 1999. 12.
-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자활사업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2000. 12.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운영사례 기초연구』, 정책자료집, 2005. 2.
- 삶의질향상기획단, 『공동체와 함께 하는 자활지원』, 2000. 1.
- 서울시정개발연구원·보건복지부, 『지역특성별 자활지원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2000. 9.
- 신섭중, 「생존의 보장과 공적부조」, 『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부산대학교, 1979.
- 유태균, 「미국 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효과 및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00.

- 이현주·김미곤·강혜규·노대명·송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1-24, 2001. 12.
- 자활종합지원센터, 『고용과 지역개발(제1권-종합리포트)』, 2001. 6.
- 최현수, 「미국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3.
- \_\_\_\_\_,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빈곤감소효과 추정」, 『사회복지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2.
- \_\_\_\_\_,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효과성 추정 및 시행방안 연구」, Working Paper 04-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_\_\_\_\_, 「영국의 근로보전세제의 개편 배경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0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
- \_\_\_\_\_, 「근로보전세제의 기본원리와 쟁점」, 『복지동향』, 통권 제77호, 참여연대, 2005. 4.
- 한국도시연구소, 『자활생산공동체운동의 길잡이』, 연구보고 2000-2, 2000. 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I)』, 용역보고서 2000-09-1, 2000. 4.
- \_\_\_\_\_,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II)』, 용역보고서 2000-09-2, 2000. 4.
- 황덕순,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0. 12.
- Attanasio, Orazio and Thomas McCurdy, “Interactions in Family Labor Supply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Impact of the EITC”, Mimeo, Stanford University, 1997.
- Blumenthal, Marsha, Brian Erard, and Chih-Chin Ho, “Participation and Compliance with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Feb. 2001.
- Browning, Edgar K.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Income

- and Welfare”, *National Tax Journal*, Vol. 48, No. 1, March 1995, pp. 23~43
- Danziger, Sheldon and Robert Haveman, “How Income Transfer Programs Affect Work, Savings, and Income Distributio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9, Sep. 1981, pp. 975~1028.
- Dickert, Stacy, Scott Houser, and John Karl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ransfer Programs: A Study of Labor Market and Program Participation”, *Tax Policy and the Economy*, James M. Poterba (e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and the MIT Press 9, 1995, pp. 1~50.
- Eissa, Nada and Hilary Williamson Hoyn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Couples”, NBER Working paper #6856, 1998.
- Eissa, Nada and Jeffrey B. Liebman, “Labor Supply Respons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1, Issue 2, May 1996, pp. 605~637.
- Gilbert, Neil, 『복지국가에서 능력개발국가로-미국 사회복지의 이해』, 2001.
- Holtzblatt, J., J. McCubbin and R. Gillette, “Promoting Work through the EITC,” *National Tax Journal*, vol. 47, 1994, pp. 591~605.
- Hotz, V. Joseph and John Karl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NBER Working Paper 8078, Jan. 2001.
- Hotz, V. Joseph, Charles H. Mullin, and John Karl Scholz,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Families on Welfar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arch, 2001.
- Internal Revenue Service, 1999.
- John B. Horowitz, “Income Mobility and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conomic Inquiry*, Vol. 40, No. 3, July 2002, pp. 334~347.
- Joint Committee on Taxation, 1975-1997.

- Liebman, Jeffrey,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Incentives and Income Distribution", *Tax Policy and the Economy*, 1997.
- Meyer, Bruce D. and Dan T. Rosenbaum, "Welfar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Labor Supply of Single Mothers", NBER Working Paper 7363, Sep. 1999.
- Moffit, Robert and Anuradha Rangarajan, "The Work Incentives of AFDC Tax Rates: Reconciling Different Estimat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6, Issue 1, Winter 1991, pp. 165~179.
- Moffit, Robert, "Incentive Effects of the U.S. Welfare System: A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0, March 1992, pp. 1~61.
- Pollin, Robert, "Anatomy of Clintonomics", *New Left Review*, May-Jun 2000, pp. 17~46.
- Rosen, Harvey S., *Public Finance* (6th Edition), Boston,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2002.
- Scholz, John Karl,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Participation, Compliance, and Antipoverty Effectiveness", *National Tax Journal*, March 1994, pp. 59~81.
- Scholz, John Karl and Kara Levine, "The Evolution of Income Support Policy," Mimeo,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May, 2000,
- Stiglitz, Joseph E.,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3rd Edition), New York/London, W.W. Norton & Company, 2000.